

의안번호	2220769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6. 9. 10.
추계번호	26B429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제2항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및 <u>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재량규정
3	안 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제2항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 (미대상)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¹⁾ 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3	안 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① 현행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외에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활필수품”을 추가하여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②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미반납 시 체납채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44조제2항) 개정안 시행으로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의 범위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품목 및 비용 지원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실하여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증가분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44조의3)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 회의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협의체의 구성 여부, 구성 인원 및 회의 횟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assembly.go.kr